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77346(본소), 2021가단96422(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 변호사 정우순

원고 승계참가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 변호사 고혜련, 임현진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연 담당 변호사 소성록, 김경혜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12,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반소로 인한 비용 중 1/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3,9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취지

가. 주식회사 B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58,27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주식회사 D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에게 430,543,2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1.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F 소재 피고의 가구 매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9. 10. 14.부터 2020. 1. 31.까지,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중 선금금 45,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① 계약금 15%, ② 기초작업과 동시에 H빔 발주를 위하여 G에서 70,000,000원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 ③ 은행에서 기성금 지급 시마다 당시 부가세 및 자기자본부담금을 지급, ④ 나머지 공사대금은 은행자금시설기준에 의거하여 각 공정공사 완료 후 건축주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은행에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시공사가 요청한 기성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현장 실사한 후 공사비 지급 전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 시공사에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9. 10. 18. 40,000,000원[계약금(선금금) 45,000,000원 중 일부], 2019. 11. 28. 41,000,000원(원고의 1차 기성금 청구금액 60,500,000원 중 일부), 2020. 1. 14. 40,000,000원 및 2020. 1. 21. 34,000,000원(원고의 2차 기성금 청구금액 102,300,000원 중 일부)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추가공사 및 공사변경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2020.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뒤 2021.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4.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다고 통보한 뒤 2021. 8. 9.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아래 각 ‘피고에 대한 송달일’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결정일자	채권자(사건번호)	청구금액(원)	피고에 대한 송달일	비고
2019. 12. 24.	H 주식회사 (2019타채46306)	29,158,659	2019. 12. 27.	2020. 6. 17. 취하서 제출되어 2020. 6. 22. 피고에게 송달됨
2020. 1. 7.	I 주식회사 (2020타채30055)	42,819,553	2020. 1. 9.	
2021. 4. 21.	J (2021타채37956)	30,665,654	2021. 4. 23.	2020. 7. 22. 취하서 제출되어 2022. 7. 25. 피고에게 송달됨
2021. 7. 5.	주식회사 K (2021타채43049)	31,774,782	2021. 7. 5.	
2021. 8. 9.	주식회사 B (원고 승계참가인) (2021타채45648)	58,272,447	2021. 8. 11.	
2023. 3. 28.	주식회사 D (원고 승계참가인) (2023타채36439)	430,543,255	2023. 3. 31.	
합계		623,234,3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으로 총 2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중 155,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7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13,571,8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는 2021. 8.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8,272,447원 부분을 추심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는 2023. 3. 2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30,543,255원 부분을 추심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완공예정일(2020.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위 완공예정일 다음 날인 2020.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나머지 공사 완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21. 5. 12.까지의 지체상금 140,100,000원(= 공사대금 300,000,000 × 지체상금율 1/1000 × 공사 지체일수 467일)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상계한 뒤 남은 나머지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 채권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2,819,553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는 I 주식회사가, 31,774,782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K이, 58,272,447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가, 430,543,255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원고의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채권자들의 취하에 따라 해제됨), 위 각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각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은 563,410,037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83,971,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치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본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판단

-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기성금이 70,4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내용과 달리 추가로 시공한 창호공사, 판넬공사, 화장실 공사비(1층에 설치된 화장실을 철거한 후 2층에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가 각 563,887원, 7,609,703원, 7,556,13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추가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공장의 기초레미콘, 2층 바닥레미콘에 전기배관을 추가로 공사하였고 그 공사비가 3,000,000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공장 1층 바닥에 전기배선공사 구간이 존재하고(2층 바닥레미콘에는 전기배관공사 구간이 존재하지 아니함), 그 부분 공사비가 762,512원으로 산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위 공장의 전기내선공사가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전기배선공사 부분도 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추가공사 중 화장실 공사에 대하여, 처음부터 화장실을 2층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화장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겨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공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제출된 도면에 화장실 위치가 1층이었고 피고가 공사 도중 화장실 위치를 2층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의해 화장실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실 위치 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7,556,132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15,729,722원(= 563,887원 + 7,609,703원 + 7,556,132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57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3,971,800원(= 70,400,000원 + 13,5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 중단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해 140,100,000원 상당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완공예정일 2020. 1.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않은 채 2020.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및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최초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2층 건물로 공사변경을 하면서 용도변경허가가 늦게 나왔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추가공사나 공사변경 등을 요구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은행에 기성청구서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점, 그런데 2019. 12.경부터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 원고는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은행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대출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거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분쟁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설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명령 송달 당시 기성금 액수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은행대출이 아닌 직접 출자로 기성금을 전액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기성금을 공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2019. 12. 27.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일부나 원고의 기성금 청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비중이 크지는 않았고 원고의 기성금 청구 액수가 적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시 제출된 도면에 2층 건물로 완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변심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늦게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의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 지시가 있긴 하였으나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그 비중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전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30,000,000원인 반면 추가 공사대금은 15,729,722원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명백히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21. 3. 12. 송달되어 피고는 위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완공예정일 다음 날인 2020. 2. 1.부터 2021. 5. 12.(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3.부터 2개월 경과일)까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 140,100,000원(= 300,000,000 × 지체상금율 1/1000 × 공사 지체일수 46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일부 및 원고의 기성금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지체상금액 140,100,000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위 액수의 7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8,070,000원(= 140,100,000원 × 0.7)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진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한 2020. 4.경 무렵에는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은 성질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9. 14.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 9. 15. 그 이행기가 도달함으로써 위 일시에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으므로(이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98,07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83,971,800원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9.부터 2021. 9. 15.까지의 지연이자 3,485,404원(= $83,971,800\text{원} \times 0.031 \times 505/365$, 원 미만 버림), 원고의 공사대금 83,971,8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은 10,612,796원(= 98,070,000원 - 3,485,404원 - 83,971,8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위 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 후 남은 지체상금 10,612,7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1. 9.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